

불법 사무장병원 재판 선고 결과

1.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적발 주요 사례
2.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병원 이란?

【1】

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(사단법인 △△△△△) 선고 결과

1. 피의자

- 최△△(46세), 현(現) 대표이사
 - 이△△(51세), 전(前) 대표이사 등 15명
- ※ 피의자별 범죄사실 참조

2. 주요 수사 경과

- '13. 5. 13.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수사의뢰
 - '13. 5. 21. 병원 압수수색
 - '13. 5. 23. 이△△(사무장병원 운영자) 구속영장 발부
 - '13. 5. 30. 조△△(사무장병원 운영자) 구속영장 발부
 - '13. 6. 1. 최△△(현 대표이사) 구속영장 발부
 - '13. 6. 22. 이△△(전 대표이사) 구속영장 발부
 - '13. 7. 19. 4명 구속구공판, 7명 불구속 구공판, 3명 구약식, 1명 기소중지
 - '13. 10.29. 구약식 피의자 3명 약식명령 확정
 - '13. 12. 5. 구공판 피의자 10명에 대하여 선고
- ※ 피의자 강△△에 대하여는 별건 사기 판결과의 죄수 문제 검토를 위하여 선고 연기, 유무죄에는 영향 없음

3. 사건 개요

- 전 대표이사 이△△은 2004.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법인인 “사단법인 △△△△△△△” 설립허가를 받고,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정관에 “의료기관 개설” 조항을 추가하여 1개 병원을 직접 개설·운영, 4개 병원으로부터 매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00~1,200만원 수수
- 현 대표이사 최△△은 기준에 운영하던 2개의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합법을 가장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방법을 모색

하던 중 전 대표이사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기존에 운영하던 2개 병원과 신설 병원 1개를 직접 개설·운영하고, 2개 병원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 수수

- 피의자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로 “의사, 한의사, 의료법인, 비영리법인”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비영리법인인 “사단법인 △△△△△△△”을 이용하여 전국적 프랜차이즈식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함
-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요양급여비용 수수행위에 사기죄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
 - 기존에는 허위 입원환자 유치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만 사기죄로 의율하였으나,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인 점 감안하여 사무장병원이 이를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극 의율한 최초 사례임

4. 선고 결과 및 판결의 의의

가. 선고 결과

순번	피의자	선고	순번	피의자	선고
1	최△△	징역 2년 / 6월 / 6월 (총 3개의 형 선고)	6	이△△	징역 8월 집유 2년
2	이△△	징역 1년 6월	7	정△△	징역 1년 집유 2년
3	조△△	징역 1년	8	황△△	징역 8월 집유 2년 벌금 300만 원
4	오△△	징역 8월 집유 2년	9	양△△	징역 6월 집유 1년
5	이△△	징역 3년 일부 무죄	10	김△△	징역 8월 집유 2년

※ 구속 피고인 4명 전원에 대하여 실형 선고

※ 피고인 이△△의 △△△△의원 개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나,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, △△△△의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내역 등의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항소 예정임

나. 판결의 의의

-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요양급여비용 수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유죄 선고
-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무장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입원환자임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, 본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향후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음
-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용이하게 되어 범죄 수익 환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

[2]

❑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적발 주요 사례

- **영리만 추구하는 '기업형 사무장병원' 적발**
 - 요양병원의 원무과장이었던 ○○○이 의사를 고용하고,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으로 지급함.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을 하나씩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6개 병원을 설립하여 기업형태로 운영함
 - 설립기준을 위반하여 설립한 6개병원이 그동안 부당 편취한 금액 1,200억 원에 달함
- **허위 입원환자 이용, '숙박업소형 사무장병원' 사무장, 의사검거**
 - 사무장 등 8명이 고령의사를 고용하여 '사무장 병원'을 개설한 이후 S대학병원 등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이라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·숙식 제공
 - 특별한 암치료행위 없이 병실만 대여해 주는 숙박형으로 운영
 -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15억원 부당 수령하고, 암환자 입원료 명목으로 1일 4~12만원씩 받고 허위, 입·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암환자들이 총 101억 원의 민간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도록 함
- **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'모텔형 병원' 보험사기 적발**
 - 적발된 사무장들은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고, 환자들에게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일당 4~12만원의 입원비를 편취
 - 환자들은 실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, 입원기간이 부풀려서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31개 보험회사로부터 23.1억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

[3]

❑ 「개설기준 위반」 사무장병원 이란?

- 법상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한정되고,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(약사)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 의료기관(사무장병원)을 설립·운영하면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사회문제 되고 있음
- 사무장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'사무장병원'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잉진료를 하거나 충분한 시설·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,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양산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불법 유인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

< 연도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>

2013.9.30.현재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분	적발내역		유형별 현황(%)		
	기관수	환수결정금액	개인	법인	의료생협
년도					
계	596	325,298	68.0	27.4	4.6
2009	7	563	85.7	14.3	0
2010	46	7,223	71.7	28.3	0
2011	163	59,499	75.9	24.1	0
2012	212	83,541	59.6	29.8	10.6
'13.9월	168	174,472	68.0	29.3	2.7